

『프랑스, 퍼플루오로알킬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물질(PFAS) 제한, 법률 제2025-188호』 심층분석 보고서

2025. 3.

TBT 통보 여부	미통보	HS Code	28, 29, 3304, 2712, 50~64
통보국	프랑스	전년도 수출규모 (천불)	283,284
작성기관	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	문의처	tbt@kotica.or.kr

[목 차]

1. 규제 개요	1
2. 제정 세부내용	2
3. 관련 법령 및 표준	5
붙임. 규제 참고자료	6

1

규제 개요

□ (도입배경 및 목적) 프랑스 의회에서는 퍼플루오로알킬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물질(poly- and perfluoroalkyl substance, PFAS)* 관련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중보건 및 환경 보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동 제정 최종안을 채택하고, 대통령이 동 최종안을 법률로 공포함

* 식품 포장재, 코팅된 조리도구, 방수용품, 접착제, 종이, 페인트 등 다양한 제품에 무척 흔하게 사용되는 화학물질로, 환경에서 분해되지 않고 장기간 잔류하면서 환경오염 및 인간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함

□ (규제요지) 프랑스 의회에서는 ①특정 제품에서 PFAS 금지, ②식수 내 PFAS 관리, ③오염자 부담 수수료 등의 내용을 규정하는 동 제정안을 마련함

TBT 통보번호	미통보	통보일	-
		고시일	2025년 2월 28일
규제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과불화알킬(PFAS) 물질 제한, 법률 제2025-188호 Per-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 (PFAS) Restrictions, Law No. 2025-188 		
규제부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프랑스 의회 French Parliament 		
요구사항 유형	PFAS 함유 특정 제품의 제조, 수입, 수출 및 시장 출시 금지		
제·개정 상태	제정 최종안		
채택일	2025년 2월 20일		
의견수렴 마감일	-		
발효일	2025년 3월 1일		
준수기한	단계적 시행(제정 세부내용 참조)		

□ (적용대상 및 수출규모)

적용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화학물질, 화장품, 왁스, 의복, 섬유, 신발 Chemicals, Cosmetics, Waxes, Clothes, Textiles, Footwear 		
적용범위	PFAS를 함유한 특정 제품(본문 [표 1] 참고)		
對발행국 수출액 (전년기준, 천불)	283,284	HS Code	28, 29, 3304, 2712, 50~64

□ (제정 세부내용)

- (개요) 프랑스 의회에서는 PFAS 관련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중보건 및 환경 보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①특정 제품에서 PFAS 금지, ②식수 내 PFAS 관리, ③오염자 부담 수수료 등의 내용을 규정하는 동 제정 최종안을 채택하고, 대통령이 동 최종안을 법률로 공포함
- (특정 제품에서 PFAS 금지) 동 제정 최종안에 따라 환경법을 개정하여 PFAS를 함유한 화장품, 왁스제품, 섬유 의류와 신발제품* 및 방수제에 대해 무료 또는 유료로 제조, 수입, 수출 및 출시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함
 - * 단, 특별히 국방 또는 시민 안전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보호와 안전을 위해 설계된 섬유 의류 및 신발은 제외되며 그 목록은 법령으로 지정됨
 - 특정 제품(①화장품, ②왁스제품, ③섬유 의류와 신발제품 및 방수제)에서 PFAS 사용을 금지하는 동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
 - 2030년 1월 1일부터는 PFAS가 포함된 모든 섬유제품*에 대해 제조, 수입, 수출 및 출시하는 것을 금지할 예정임
 - * 단, 필수 용도에 필요한 섬유 제품, 국가 주권 행사에 기여하고 대체 해결방안이 없는 섬유 제품 및 산업용 기술 섬유는 제외되며, 그 목록은 법령으로 지정됨
 - 특정제품에서 PFAS를 금지하는 동 조치는 법령으로 정해진 잔류값 이하 농도로 PFAS 물질이 포함된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음

[표 1] 동 제정안 - 특정 제품에서 PFAS 사용금지

제1조	
I. 환경법 제V권 제II편은 다음과 같이 제IV장으로 보완된다:	제IV장
과불화알킬 및 폴리불화알킬 물질 노출로 인한 위험 예방	
제L524-1조. - I. - <u>2026년 1월 1일부터, 다음 제품의 유료 또는 무료 제조, 수입, 수출, 및 출시가 금지된다:</u>	
1. <u>퍼플루오로알킬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물질이 포함된 모든 화장품</u>	
2. <u>퍼플루오로알킬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물질이 포함된 모든 왁스제품</u>	
3. <u>퍼플루오로알킬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물질이 포함된 소비자용 모든 섬유 의류, 모든 신발 제품 및 섬유 의류와 신발 제품용 방수제. 단 특별히 국방 또는 시민 안전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보호와 안전을 위해 설계된 섬유 의류 및 신발은 제외되며, 그 목록은 법령으로 지정된다.</u>	
II. 2030년 1월 1일부터, 퍼플루오로알킬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물질이 포함된 모든 섬유제품의	

유로 또는 무료 제조, 수입, 수출 및 출시가 금지된다. 단, 필수 용도에 필요한 섬유 제품, 국가 주권 행사에 기여하고 대체 해결방안이 없는 섬유 제품 및 산업용 기술 섬유는 제외되며, 그 목록은 법령으로 지정된다.

III. I과 II에 명시된 금지는 법령으로 정해진 잔류값 이하 농도로 퍼플루오로알킬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물질이 포함된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.

- (식수 내 PFAS 관리) 식수 수질에 대한 보건 관리를 위해 식수 내 PFAS의 존재 여부를 모니터링하도록 규정하고, 모든 배출 장소의 PFAS 물질 배출에 대한 정화 조치 및 최대 배출 한계를 법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
- 위험 예방 소관 장관은 보건부 장관과 공동으로 환경으로 PFAS 물질을 배출했거나, 배출하고 있는 모든 현장에 대한 지도를 작성 및 공개하여야 하며 최소 연 1회 수정하도록 규정함

[표 2] 동 제정안 - 식수 내 PFAS 관리

제1조

II. 공중보건법 제L.1321-9조 뒤에, 다음과 같이 제L1321-9-1조가 삽입된다.

제L1321-9-1조. - 식수 수질에 대한 보건 관리에는 식수용 물에 존재하는 법령으로 정해진 퍼플루오로알킬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물질에 대한 관리가 포함된다. 또한 본 항목에 명시된 법령에 등재되지 않은 퍼플루오로알킬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물질이 정량화가 가능하고 지역 상황에 따라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, 해당 물질에 대한 관리가 포함된다. 위험 예방 소관 장관은 보건부 장관과 공동으로, 퍼플루오로알킬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물질이 환경으로 배출되었거나 배출되고 있는 모든 현장에 대한 지도를 작성하여 전자 파일로 대중에게 제공하고 최소한 연 1회 수정한다. 이 지도에는 가능한 경우, 해당 물질의 환경 배출에 대한 정량 측정이 포함된다. 모든 배출 현장의 퍼플루오로알킬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물질 배출에 대한 정화 조치 및 최대 배출 한계는 법령으로 정해진다.

제2조

I. 환경법 제L. 523-6조 뒤에 다음과 같이 제L. 523-6-1조가 삽입된다.

제L. 523-6-1조. - 프랑스는 퍼플루오로알킬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물질과 관련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2025년 2월 27일자 법률 제2025-188호의 공포 후 5년 이내에 산업 시설의 퍼플루오로알킬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물질 수생 배출이 종식되도록 이러한 배출을 점진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국가 계획을 채택한다. 이 계획, 해당 물질의 목록 및 본 조항의 시행 방법은 법령으로 정해진다.

제3조

본 법률 공포 후 1년 이내에, 관리가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또는 위임되거나 관계없이, 정부는 공공 식수 및 위생 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지방 당국이 관리하는 식수용 물의 정화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부처간 행동 계획을 채택한다. 이 계획은 정화 정책을 위해 지역 당국이

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, 수자원 기관의 역할과 임무, 이 공공 정책을 지원하는 국가의 역할 및 예상되는 일정을 제시한다.

- (오염자 부담 수수료)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환경에 배출되는 PFAS 물질의 질량(연간)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해당 기업에 세금을 부과함
 - 수수료 징수 기준액은 100 g 단위로 정해지며, 수수료 요율은 100 g 당 100 유로로 설정됨

[표 3] 동 제정안 - 오염자 부담 수수료

제4조

환경법 제L. 213-10-2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.

1. I 및 II의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문장 마지막에서 단어 "IV에서"가 "IV 및 IV 2항에서"로 대체된다.
2. IV 뒤에 다음과 같이 IV 2항이 추가된다.

IV 2항. - 제L. 512-1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시설 운영자 및 퍼플루오로알킬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물질 배출 활동을 하는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는 해당 활동으로 인해 연간 물로 직접 또는 수거 네트워크를 통해 배출된 퍼플루오로알킬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물질의 질량을 기준으로 한다. 수수료 징수 기준액은 100 그램으로 정해진다. 수수료율은 100 그램당 100유로이다.

본 IV 2항의 첫 번째 단락에 명시된 수수료의 기준이 되는 퍼플루오로알킬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물질의 목록은 법령으로 정해진다.

(관련 법령)

- Code de l'environnement(환경법)¹⁾
- Code de la santé publique(공중보건법)²⁾

1) <https://www.legifrance.gouv.fr/codes/id/LEGISCTA000006129026/>

2) https://www.legifrance.gouv.fr/codes/article_lc/LEGIARTI000047468854/2222-02-22

(규제원문 출처)

- 프랑스 관보

- 원문링크: <https://www.legifrance.gouv.fr/download/pdf?id=z1qB8sWbalojVtx8AaeSDvW-c5JqEb-SEAz0MfCl1vU=>